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채권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마련 등〉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464호)

2026.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국가채권 채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마련 등(안 제14조의4 신설 등)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도결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확인(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실태확인원 채용(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다. 국세청장 위탁(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활용(안 제14조의4제4항 신설)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바. 실태확인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14조의4제6항 신설)

규정한 사항 외의 실태 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9조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국세청장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안 제40조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차. 국세청장 위탁(안 제40조제2항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국가채권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마련 등 (안 제1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 중앙관서의 장은 납입기한이 지나 이행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과태료 채권 미납 포함)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태 확인을 할 수 있음 (안 제14조의4 제1항) -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질문 -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위의 행위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음 (안 제14조의4 제2항) ○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 내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안 제14조의4 제3항·제4항)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4조의4 제5항) ○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39조) ○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과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안 제40조)

현행 「국가채권 관리법」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지된 납입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¹⁾.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거나, 담보물 처분,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 소 제기 등을 통해 채권의 강제이행을 도모하고 있음²⁾.

1) 제14조(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는 채권(제3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公正證書) 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요청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권 중 국세채권을 제외³⁾한 국세외수입채권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84.3조원 중 미수납액이 25.1조원(8.8%)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16.2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채권 미수납액 및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2020~2024년 국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조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	213.7	193.2	1.4	19.1
2021	248.6	226.3	1.3	21.0
2022	245.5	215.5	1.2	22.8
2023	254.7	229.6	1.1	24.0
2024	284.3	257.8	1.4	25.1

자료: 재정경제부

[2020~2024년 국세외수입 체납액 잔액]

(단위: 조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체납액	13.3	14.1	14.5	15.9	16.2

자료: 재정경제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채권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실태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채권의 관리효율성과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3) 국세채권의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로, 국세채권의 경우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26.1.1. 시행)을 통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하여 실태 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⁴⁾.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가채권 관리를 개선하고 체납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여 국세청의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과 과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국세 실태확인원(체납관리단) 운영체계는 참고자료 참조

둘째, 실태확인원을 활용하여 채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채납자를 납부능력, 채납금액, 채납 횟수 등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체계적인 채납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셋째, 실태확인원이 사실확인을 위해 채납자의 거소 등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채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재정경제부는 채납된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로 국가채정 수입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세청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단기간에 채납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실태확인원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형 채납자는 복지서비스에 연계하고 고의채납자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태확인원의 실태확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실태확인원은 채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채납자에 대한 전화·방문 상담을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실태확인원이 개별 국민의 주소, 연락처, 재산 상황 등 상당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음.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태확인원은 공무원이 아닌 2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으로, 제도 운영이 지속될수록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 누적됨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⁵⁾.

또한, 동 제도는 실태확인원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자의 주변인에게 체납 사실을 인지시키는 등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바, 장기·상습체납자가 아닌 단순 과실로 체납한 자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까지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실태확인의 대상이 되는 체납자의 범위를 대통령령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납세자 실태확인원에 관한 위 「국세징수법」 개정의 경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실태확인원 제도의 실효성, 실태확인원의 자격요건 문제와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체납금액·기간을 기준으로 실태확인 대상을 선별하여 운영할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한 바 있음⁶⁾.

5)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에 1,000명, 2027년도와 2028년도에 각각 3,0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임

6) 의안번호 제221473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둘째, 법체계를 고려하여 과태료채권은 실패확인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국가채권 관리법」은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⁷⁾. 이는 동법이 국가와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적 성격의 채권을 보전·행사·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⁸⁾, 벌금·과태료 등은 국가가 부과하는 공법(公法)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임.

그럼에도 안 제14조의4 제1항은 예외적으로 과태료채권도 실패확인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국가채권 관리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과태료채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미납 시 가산금·증가산금 징수와 채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등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⁹⁾, 과태료채권만을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등과 달리 취급할

7)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채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9)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채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채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채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채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실태확인원의 업무와 현행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업무가 중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국가채권 관리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을 받은 기관은 체납자의 주소·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 상담 등 사실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채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채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국가채권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소·거소확인	5,696	4,193	5,806	1,440	24,254
재산조사	60,543	69,113	156,491	79,805	71,221
안내문 발송	225,020	242,777	171,005	398,734	379,210
전화·방문상담	66,228	54,937	39,506	20,951	17,896
계	357,487	371,020	372,808	500,930	492,581

자료: 재정경제부

주: 국세 및 국가채권 체납액 전체에 대한 사실행위 수행 건수로, 체납액 세목별 건수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실태확인원 또한 거소 확인, 재산조사, 전화·방문 상담 등 체납액 회수에 관한 사실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업무 범위가 중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위탁과 실태확인원 고용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성과 양자의 업무범위 구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넷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있는데, 안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편성,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 절차를 거쳐야 함을 고려할 때 구축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일부 유예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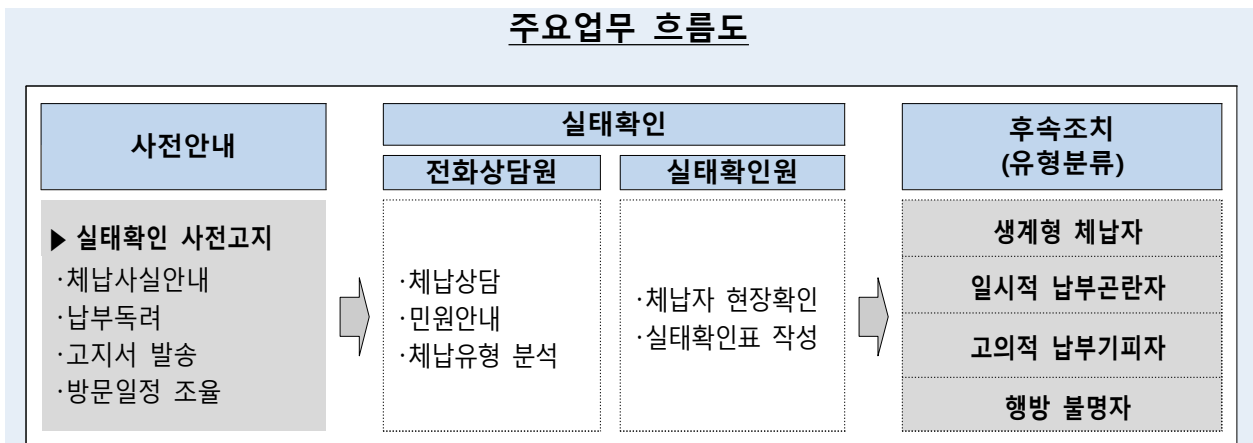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체계

-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

*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질문, 납부의사 및 납부계획 확인 등

- (예비단계) ①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는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②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자에게 문자 메시지·전화 등으로 실태확인 사전안내 후, ③ 실태확인원에게 방문대상 명단과 실태확인표 등을 교부
- (실태확인) 실태확인원은 전달받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실태, 생활환경, 체납사유 등을 질문·확인하는 등 체납자 유형 분류를 위해 세밀하게 실태확인을 실시

주요업무 흐름도



|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4조의4(실태확인)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제3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포함)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고, 제8

현행	개정안
<신 설>	조의 동의는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1. 채권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채권의 채납정보 및 채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4. 채권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채권의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의처

02)6788-5160